2023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변경 세부지침

│. 목 적

- 복무만료하는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을 대상으로 現 1, 2년차 공중보건의사 (1년 이상 근무한 자)의 근무지 이동 변경 실시
 - 도서·벽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우선순위 등 부여로 도서·벽지 근무 인센티브 제공 및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고

Ⅱ. 세부운영방안

① 관련 규정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제6조(근무지역 등의 변경)
- ○「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」3. 근무지의 변경

② 신청대상자(요건)

- 1.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보의 (단, **견책 이상의 징계**를 받거나 근무 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 **2회 이상의 경고이상** 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**복무연장 행정처분**을 받은 자는 **제외**)
 - ① 중앙배치기관 대표 공중보건의사
 - ② 시·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전국 대표, 부대표 공중보건의사
 - 교정시설(국립법무병원 포함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 -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(단, 표창 이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)
 -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
 - ③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
 - ④ 정원 감축 등의 이유로 인해 적정배치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

2. 시·도와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시·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,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 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결과 '미흡'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
 - ① 도서지역 및 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 - ② 전국 대표, 부대표 공중보건의사
 - ③ 교정시설(국립법무병원 포함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 -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(단, 표창 이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)
 - ⑤ 각 시·도 및 질병관리청에 소속되어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

3. 전문과목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무지 이동

- 다음 각 호의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,2의 근무지 이동을 위한 신청대상자 요건에 관계 없이 아래의 각 과목별 전문과목이 배정된 곳에 신청 가능
 - ① 내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,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, 국립마산병원, 국립목포병원
 - ② 외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,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
 - ③ 산부인과 : 분만 취약지역 보건의료원 (옹진군은 백령병원)
 - ④ 소아청소년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,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,
 - ⑤ 응급의학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,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
 - ⑥ 정신건강의학과 : 국립공주병원, 국립나주병원, 국립부곡병원, 국립춘천병원
 - ⑦ 신경과 :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, 국립공주병원, 국립나주병원, 국립부곡병원, 국립춘천병원, 국립소록도병원
 - ⑧ 신경외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,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

- ⑨ 정형외과 : 인천 옹진군 백령병원
- ⑩ 흉부외과 : 국립춘천병원, 국립마산병원
- ① 피부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
- ① 재활의학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워
- ③ 안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, 국립소록도병원
- (4) 영상의학과 : 국립공주병원, 국립춘천병원, 국립마산병원, 국립목포병원
- ① 이비인후과 : 국립소록도병원
- 16 성형외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
- ⑪ 마취통증의학과 :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
- ® 치과전문의: 장애인구강진료센터(경북대학교치과병원, 전남대학교 치과병원, 부산대학교치과병원, 전북대학교치과병원)

③ 이동배치기준

1.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(중앙↔중앙)

- 근무기관 별 배정인원은 해당기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과목 활용도에 따라 이동인원 배정
- 중앙배치기관은 기관 별·과목 별 이동배정 인원에 맞추어 이동배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전문과목 등이 활용되도록 배치
 - 중앙배치기관 간의 이동 신청과 시·도·중앙배치기관 간 이동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중앙배치기관 간 이동 우선
 - 중앙배치기관 내에 이동을 신청하였으나 1지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지망으로, 2지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지망 순으로 배정
 - 기관 정원 및 전문과목 폐지 등으로 3지망에도 배정되지 못하거나 전문과목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결원된 기관 및 전문과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에서 직권 배정
 - ※ 본인의 희망 배치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
 - ※ 법무부 또는 질병관리청 내에서의 변경은 각 기관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따름

<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우선순위>

- 가. 중앙배치기관 대표. 전국대표·부대표
- 나. 교정시설(국립법무병원 포함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다.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
- 라.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마. 동일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바.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 등의 이유로 인해 적정배치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
- 사. 가~바 우선순위에 있더라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고 등 행정 처분·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등 이 있는 자는 해당 순위보다 1단계 하향조정
- 아. 가~바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 순위(조건)일 경우 추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※ 가~사의 우선순위가 중복되더라도 가장 높은 순위 하나만 적용
- ① 공중보건의사 연차가 높은 경우 우선
- ② 동일 기관유형별(질병관리청, 국립정신병원, 국립결핵병원, 법무부) 기관 근무자 우선
- ③ ⓐ 「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[별표 1]에 따른 지역 등급표 순서를 반영 (가→나→다→라 순으로 순서가 높으며 단, 병원선은 "가"로 봄)
 - ⑤ ③에서 누락된 지역은 「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」[별표 1]에 따른 지역 등급표 순서를 반영(가→나→다→라 순으로 순서가 높음)
 - © ②~ⓑ에서 누락된 지역은 「지방공무원 특수지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[별표 1]에 따른 등급표 순서를 반영 (지역별 특, 갑, 을, 병을 가, 나, 다, 라로 보며 가→나→다→라 순으로 순서가 높음)
 - * 국민권익위원회 (의안번호 제2020-1소위06-복01호) 권고 사항을 따름
- ④ 생년월일이 빠른 순 우선
- ⑤ ①~④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주의 이상 행정 처분,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등이 있는 자는 최하위 조정

2. 시·도와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(시·도↔시·도, 시·도↔중앙)

- 시·도와 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는 해당 시·도 또는 중앙배치기관에 배치
 - 중앙배치기관 등에 1지망 신청하였으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지망으로, 2지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지망 순으로 배정
 - 기관 정원 및 전문과목 폐지 등으로 3지망에도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원된 기관 및 전문과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가 직권 배정
 - ※ 본인의 희망 배치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

── < 시·도·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우선순위> -

- 가. 도서지역 및 병원선(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나. 전국대표, 부대표 공중보건의사
- 다. 교정시설(국립법무병원 포함)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라.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
- 마. 각 시·도 및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바. 가~마 우선순위에 있더라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고 등 행정 처분,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등 이 있는 자는 해당순위보다 1단계 하향조정
- 사. 가~바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 순위(조건)일 경우 추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※ 가~마의 우선순위가 중복되더라도 가장 높은 순위 하나만 적용
 - ① 공중보건의사 연차가 높은 경우 우선
 - ② ③ 「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[별표 1]에 따른 지역 등급표 순서를 반영 (가→나→다→라 순으로 순서가 높으며 단, 병원선은 "가"로 봄)
 - ⑤ ②에서 누락된 지역은 「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」[별표 1]에 따른 지역 등급표 순서를 반영(가→나→다→라 순으로 순서가 높음)
 - © @~ⓑ에서 누락된 지역은 「지방공무원 특수지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[별표 1]에 따른 등급표 순서를 반영 (지역별 특, 갑, 을, 병을 가, 나, 다, 라로 보며 가→나→다→라 순으로 순서가 높음)
 - * 국민권익위원회 (의안번호 제2020-1소위06-복01호) 권고 사항을 따름
 - ③ 생년월일이 빠른 순 우선
 - ④ ①~③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주의 이상 행정 처분,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등이 있는 자는 최하위 조정

Ⅲ. 행정사항

- □ 시·도 및 중앙배치기관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변경 신청
 - 시·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근무지 변경 대상자 요건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대상자를 <u>'23.3.17.(금)</u>까지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(기한이후 제출 시 미반영)
 -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"해당없음"을 공문으로 회신
 - ※ 근무지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청대상요건, 근무기간, 희망지역 표기 등의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
 - 시·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「(서식1) 시·도 근무지 변경 신청서」와「(서식2) 중앙배치기관 근무지 변경신청서」**엑셀양식**을 총괄하여 반드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
 - ※ 증빙자료는 스캔 후 PDF파일(원본은 자체 보관)로 함께 제출 요망
- □ 이동신청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통보는 **'23.3월 말까지 통보**할 예정이며, **'변경된 배치기관' 근무시작일**은 **'23.4.18.(예정)***
 - * 단, 원 배치기관에서의 실제 근무종료일은 4.16.이나, 이동시간(이사 등)을 감안하여 근무상황부상 종료일은 4.17.으로 복무 처리
 - ※ 차후 이동 배치일 변경될 수 있음
- □ 각 시·도지사는 근무지 변경자를 2023년도 신규배치 가능 기관에 한정 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보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
 - ※ 2023년도 배치 제외 기관에 배치할 경우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이동 배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예정